

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변경규약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9년 4월 1일

나. 회부일자 : 1999년 4월 1일

3. 제안이유

가. 협의회 위원이 상임위원(서울특별시,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사)과 비상임위원(강원도지사, 충청북도지사)으로 구분되었던 것을 협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상임·비상임위원의 구분을 폐지하고,

나. 규약내용중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수정보완하며, 그간 정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개편에 맞추어 기관명칭과 직명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임.

4. 주요골자

가. 협의회 위원의 상임·비상임 구분폐지(안 제4조 제1항)

- 수도권 5개 시·도를 상임 및 비상임위원으로 구분했던 것을 폐지
- 협의회 사무처리를 위한 서기 3인(서울, 인천, 경기)을 5인(각 시·도에 1인씩)으로 조정

나. 자문위원 위촉대상에 지방의회의원 추가(안 제13조 제2항)

-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 자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위촉대상에 “지방의회의원” 추가(법시행령 제53조 2항)

다. 안전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회의참석 근거 규정 신설(안 제10조 제2항)

- 협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“안전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”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 신설(행자부 행정협의회구성및운영규칙 제3조)

라. 규약상 구체적인 정기회의 소집시기 조정(안 제6조 제1항)

- 정기회의를 연 2회 2~3월과 8~9월중에 소집하도록 특정시기로 구체화되어 있던 규정을 “상·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”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회의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함.

마. 관계기관·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및 실무협의회의위원장
· 간사등의 직명 변경(안 제3조, 안 제4조, 안 제7조, 안 제9조)

- “인천직할시”를 “인천광역시”로
- “내무부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
- “부시장 또는 부지사”를 “행정부시장” 또는 “행정부지사”로
- “기획관리실장”을 “기획업무담당실장”으로
- “기획관리실 담당관”을 “광역행정업무를 주관하는 담당관 또는 담당과장”으로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수도권행정협의회 규약 변경
규약안을 검토한 바,

본 협의회는 서울특별시를 중심으로 한 충청북도,
인천광역시, 경기도, 강원도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
수도권 광역행정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
1988년 11월 구성하였으며,

지난 2월 25일 제10회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불합리한
규약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본
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,

지방자치법 제148조는 규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
주요내용으로는

협의회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상임·비상임위원의 구분을 폐지하고 지방의회 의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

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회의참석 규정을 신설하고, 2~3월과 8~9월 연 2회 개최하던 정기회의를 상·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개최하도록 함으로써 회의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고,

규약내용중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명확하지 않은 부분의 수정보완과,

그간 정부조직 및 지방자치단체의 직제개편에 따른 기관명칭과 직명을 변경 조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